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8716 |
| 의 뢰 인 | 김한규의원 |
| 회 답 일 | 2025.3.24. |
| 추계번호 | 24D1331 |

#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<br>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7조<br>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|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국가의 의료기관(보훈병원 포함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함(안 제2항)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,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(안 제7항) | |

# 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미첨부근거규정 |
|---|---|---|
| 1 | 안 제7조<br>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|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진료인원과 진료단가의 변동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,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 |

## 2. 상세사유

❑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전액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보훈병원에서 국가의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전액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할 경우,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이 쉬워짐에 따라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❑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훈병원의 진료인원은 감소하고, 다른 국가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시점

에서 개정안에 따른 의료기관별 진료인원의 변동 규모나 진료비 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❑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- ❑ 참고로, 2023년 11월 기준 보훈병원은 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, 대전, 인천 등 6개 대도시 지역에 설치·운영 중이고, 위탁병원은 전국 678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, 2023년 기준 의료지원 총액은 7,008억 5,500만원임

[표 1]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현황: 2023.11월 기준

| 구분 | | 중앙 | 부산 | 광주 | 대구 | 대전 | 인천 | 소계 (평균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개원일 (현위치이전일) | | 1953.2월 (1983.8) | '84.4월 (1992.5) | 1987.4월 | 1993.2월 | 1997.11월 | 2018.8월 | |
| 병상수 | 허가병상 | 985 | 445 | 561 | 475 | 383 | 137 | 2,986 |
| | 운영병상 | 973 | 375 | 484 | 425 | 272 | 137 | 2,666 |
| 진료 과목 | 직제 | 31개 | 21개 | 24개 | 22개 | 20개 | 15개 | 133개 |
| | 운영 | 30개 | 27개 | 28개 | 20개 | 28개 | 17개 | 150개 |
| 환자수 | 외래(日) | 4,538 | 2,139 | 1,734 | 1,815 | 1,614 | 566 | 12,406 |
| | 입원(日) | 571 | 348 | 326 | 354 | 219 | 38 | 1,856 |
| 의료인력 | 의사 | 147 | 70 | 28 | 62.5 | 51 | 17 | 376 |
| | 간호사 | 811 | 327 | 349 | 298 | 253 | 96 | 2,134 |
| | 전공의 | 100 | 11 | 10 | 2 | 5 | 0 | 128 |
| 인력 구성 | 정원 | 2450 | 851 | 823 | 754 | 623 | 295 | 5,796 |
| | 현원 | 2512 | 873 | 925 | 777 | 679 | 294 | 6,060 |
| 인력운영비율 (정원대비,%) | | 102.5% | 102.6% | 112.4% | 103.1% | 109.0% | 99.7% | (104.9%) |
| 진료 권 | | 서울,경기, 강원 | 부산,경남, 제주,울산 | 광주, 전남북 | 대구,경북 | 대전 ,충남북 | 인천, 경기서부 | |
| 위탁병원 수('23.11) | | 203 | 132 | 124 | 82 | 85 | 52 | 678 |

자료: 국가보훈부 연구용역, 「준 보훈병원 지정 및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」, 2024.2

[표 2] 의료지원 현황: 2019~2023년

| |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연평균 증가율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보훈 병원 | 진료비(백만원) | 387,220 | 378,232 | 394,265 | 382,915 | 428,394 | 2.6 |
| | 진료인원(명) | 4,450,761 | 4,025,549 | 4,008,853 | 3,738,485 | 3,925,767 | △3.1 |
| | 진료단가(원) | 87,001 | 93,958 | 98,349 | 102,425 | 109,124 | 5.8 |
| 위탁 병원 | 진료비(백만원) | 253,350 | 249,373 | 247,932 | 246,698 | 272,461 | 1.8 |
| | 진료인원(명) | 4,444,056 | 4,040,404 | 3,710,866 | 3,566,577 | 4,014,218 | △2.5 |
| | 진료단가(원) | 57,009 | 61,720 | 66,812 | 69,169 | 67,874 | 4.5 |
| 합계 | 진료비(백만원) | 640,570 | 627,605 | 642,197 | 629,613 | 700,855 | 2.3 |
| | 진료인원(명) | 8,894,817 | 8,065,953 | 7,719,719 | 7,305,062 | 7,939,985 | △2.8 |
| | 진료단가(원) | 72,016 | 77,809 | 83,189 | 86,189 | 88,269 | 5.2 |

자료: 국가보훈부

# Ⅳ. 부대의견

❑ 해당사항 없음

# Ⅴ. 작성자

❑ 성명

| | | |
|---|---|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장삼열 | 김안나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장삼열 | 02-6788-4831 | jsy@assembly.go.kr |